

## 생활디자인학과 대학원 내규(27차 개정)

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학과내규로 정한다.

### 1. 입학자격 및 취득학점 관련 사항

	석사과정	석·박사통합과정	박사과정	비고
입학 자격	대학원 내규에 따름			제3차 개정: 동일계전공 졸업생 단서조항 삭제함.
취득 학점	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하며, 그 중 24학점은 본 학과 개설과목으로 취득해야 한다. 나머지 6학점은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취득할 수 있다.  <b>석사 학위논문 대체 실적 승인을 위해서는 선택 교과목 추가 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</b>	석·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54학점으로 총 취득학점 중 본 학과의 개설과목을 49학점이상 취득해야하며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타 학과 개설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.	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3학점으로 하며, 그 중 본 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해야한다. 통합 과목 및 선택과목 중 12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, 타 학과 개설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.	제3차 개정: 박사학위과정 수료 학점을 최저30학점으로 변경함- 대학원학칙 및 내규 2006년 9월 개정학칙(제5장 15조 제1항)에 따름(2006.10). 제6차 개정: 박사과정 필수과목 (통합디자인연구) 신설에 따라 박사과정 수료 최저학점을 33학점으로 조정 (2010. 8. 31). 제14차 개정: 통합디자인 기획, 통합디자인전시기획을 통합하여 통합디자인 기획 프로젝트를 개설,석사,통합과정 수료 최저학점을 각각 29학점, 53학점으로 조정. 제15차 개정: 졸업을 위한 최소이수학점을 석사과정 30학점, 통합과정 54학점으로 조정. 제17차 개정: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 취득학점 조항 추가 (2019.09.30). 제18차 개정: 타학과 개설과목 취득 승인 조항 수정(2019.11.25).
학점 이수	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			
필수 과목	연구방법론1과 세미나(3학점 이수), 통합디자인 기획 프로젝트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.	연구방법론1, 석사세미나(1학점), 박사세미나(3학점), 통합디자인 기획 프로젝트(석), 통합디자인연구(박)를 필수로 이수해야한다.	연구방법론1과 세미나(3학점 이수) (석사취득학점 제외), 통합디자인연구를 필수로 한다.	
보충 과목	본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영역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외에 보충과목을 이수해야한다. 보충과목은 본 학과 개설과목(학부)으로, 최대 12학점이며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.	석사과정 내규에 따름	본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영역 이외의 석사학위 소지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소지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33학점 이외에 보충과목을 최대 12학점 이수 한다. 절차는 석사과정 내규와 동일함.	제1차 개정(2003. 9.24): 석사 타 전공생의 보충과목 단서 항목 추가. 제3차 개정: 박사과정의 타 전공보충 과목 조항 추가함. 제5차 개정: 조기졸업을 위한 보충과목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하고 '최대'문구 삽입함.

	보충과목 이수 계획서는 입학 학기(3월, 9월)에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, 학과교수회의에서 이를 최종 검토한다.		제13차 개정: 타전공생의 보충과목 이수 조항과 보충과목 조항을 합침, 조기졸업자의 보충과목 면제 내용 삭제.
--	--	--	---

## 2. 수료자격요건

	석사과정	석/박사통합과정	박사과정	비고
신청 일시	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한다.			제3차 개정사항 (누락) (2006.10.31.): 3월 초와 9월초에서 날짜 변경.
수료 자격	<p>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<b>30</b>학점 이상 취득하였으며, 아래 3항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. 단, 입학 시 외국어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는다. 외국인 재학생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어시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토플 500점, CBT 173점, IBT 61점, 토익 700점, <b>텝스 600점</b>, IELTS 5.5, 토픽 5급 이상의 외국어, 한국어 성적</li> <li>2편 이상의 학술대회발표논문 또는 전시, 공모전 수상 실적(단, 학술대회발표논문 주저자 1편 이상 포함, 학술대회발표논문은 등재학술지 논문 게재로 대체 가능)</li> <li><b>국내 등재지 또는 그 이상 등급의 학술지 1편 게재</b></li> </ol> <p>제26차 개정: 국내 등재지 이상 등급의 학술지도 인정함을 추가. 제27차 개정: 25차 내규에 맞춰 1항의 텝스 점수 추가, 3항의 주저자 기준 삭제함.</p>	<p>정규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<b>54</b>학점 이상 취득하였으며, 아래의 1항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. 단, 입학 시 외국어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는다. 외국인 재학생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어시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외국어성적 및 연구실적은 박사과정 내규에 따름</li> </ol>	<p>정규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<b>33</b>학점 이상 취득하였으며, 아래의 3항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. 단, 입학 시 외국어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는다. 외국인 재학생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어시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토플 500점, CBT 173점, IBT 61점, 토익 700점, <b>텝스 600점</b>, IELTS 5.5, 토픽 5급 이상의 외국어, 한국어 성적</li> <li>2편 이상의 학술대회발표논문 또는 전시, 공모전 수상 실적(단, 학술대회발표논문 주저자 1편 이상 포함, 학술대회발표논문은 등재학술지 논문 게재로 대체 가능)</li> <li>국제2등급 이상 학술지 1편(주저자 기준) 및 국내 등재 학술지 1편 게재(국제2등급 학술지 1편은 국내 등재 학술지 2편으로 대체 가능)</li> </ol> <p>제27차 개정: 25차 내규에 맞춰 1항의 텝스 점수 추가함.</p>	<p>제2차 개정사항(2006.4.26):응시자격 2번 조항 추가. 제3차 개정: 박사응시자격 21학점 취득자로 변경함-대학원학칙 및 내규 2006년 9월 개정학칙(제5장 15조 제1항)에 따름. 제5차 개정:응시자격 2번 조항을 2, 3번으로 나눔. 제12차 개정: 외국인 재학생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어시험으로 대체 인정하는 내용 추가. 제13차 개정: IBT추가. 제14차 개정 : 필수과목 조정으로 인해 석사, 통합과정 응시 가능한 최저 학점 조정. 제16차 개정: 박사 종합시험응시자격 변경. 제18차 개정: 종합시험패지 및 수료 신청 요건 추가(2019.11.25.). 제20차 개정: 박사과정 주저자 요건 변경. 제24차 개정: 석/박사과정 학술대회발표논문 및 국내 등재 학술지 주저자 요건 변경. 제25차 개정: 석/박사과정 어학점수 기준 추가.</p>
수료 신청	수료신청자는 외국어시험성적표와 연구실적 사본 및 신	석사과정 내규에 따름	석사과정 내규에 따름	제3차 개정 사항: 성적증명서 제출 추가.

	<p>청원서, 성적증명서를 학과로 제출한다.</p> <p>또한 입학 시 외국어시험면제자는 수료신청 시 외국어시험면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.</p> <p>제26차 개정: 학교 규정에 따라 입학 시 외국어시험 합격자도 외국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변경함.</p>		<p>단, 본 학과 석사졸업자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영어시험을 합격하였으므로 박사과정 입학 및 졸업시 외국어 시험 성적표를 별도 제출하지 않는다. 또한, 수료신청을 위한 영어시험 대체 자격조건을 교수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제26차 개정: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면제 대상 범위를 변경함.</p>	<p>제3차 개정(누락)(2006. 10.31): 외국어시험면제자도 종합시험 응시신청 시 외국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기로 변경함.</p> <p>제10차 개정(2013. 4. 2): 본교 석사 출신자 및 경력자 영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 내용 추가.</p> <p>제17차 개정(2019. 09. 30.): 영어시험 대체 자격조건 문구 변경.</p> <p>제18차 개정: 종합시험 폐지로 인한 문구 변경 (2019.11.25.).</p>
--	---	--	---	---

### 3. 논문

	석사과정	석.박사통합과정	박사과정	비고
심사위원구성	대학원 내규에 따름			
심사과정 및 자격	<p>학위논문 예심 이전에 논문 내용으로 공개발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. 평균 B등급 미만으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예심을 진행할 수 없으며, 다음 학기에 공개발표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. <b>학위논문 대체실적 인정자는 공개발표심사에 참여는 하되 평가를 받지 않는다.</b></p> <p>학위논문 본심 이전에 연구결과를 국내 등재지 또는 <b>그 이상 등급의 학술지</b>에 게재하여야 한다(주저자 기준, 수료 신청 시 제출한 논문 실적과 중복 불가).</p> <p><u>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인정은 시행세칙 4항에 따른다.</u></p> <p>논문의 예심과 본심은 대학원 내규에 따른다.</p> <p>제27차 개정: 학위논문 대체실적 인정자의 공개발표 심사 참여를 명시하고 대체실적 기준을 수정함. 시행세칙 4항도 동일하게 수</p>	<p>박사과정 내규에 따름.</p>	<p>학위논문 예심 이전에 논문 내용으로 공개발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. 평균 B등급 미만으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예심을 진행할 수 없으며, 다음 학기에 공개발표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.</p> <p>학위논문 본심 이전에 연구결과를 국제 1등급 또는 국제 2등급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(주저자 기준, 수료 신청시 제출한 논문과 실적 중복 불가).</p> <p>논문의 예심과 본심은 대학원 내규에 따른다.</p>	<p>제 9차 개정사항: 연구결과 학술지 게재 필수 추가(2012.10.29).</p> <p>제14차 개정: 석사, 석박통합과정 논문 주제 전시 필수 삭제.</p> <p>제16차 개정 : 석사과정,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 과정의 논문 심사 자격 기준 추가.</p> <p>제17차 개정(2019. 09. 30.): 석사 논문 대체 기준 추가.</p> <p>제18차 개정: 종합시험 폐지 및 수료 신청 요건 추가로 인한 문구 변경 (2019.11.25.)</p> <p>제19차 개정: 공개발표 일정 변경 및 심사 추가 (2020.6.22.)</p>

	정함.		
--	-----	--	--

#### 4. 겸임교수 선발기준

제16차 개정 : 겸임교수 선발 학과 기준 삭제, 본부 규정에 따른다.

#### 부칙 :

※ 개정된 내규는 개정된 다음 학기 **입학생부터** 시행함.

생활디자인학과 대학원 내규 제정(1999년)

개정차수	개정일	개정내용
제1차	2003-9-24	
제2차	2006-4-24	
제3차	2006-10-31	
제4차	2008-10-14	2008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소급 적용함.
제5차	2008-11-11	200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함.
제6차	2010-8-31	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함.(석사과정 통합디자인기획, 통합디자인전시기획 과목으로 분리하여 따른 석사과정 수강은 현 3학기 재학생부터 소급 적용함) 박사학위과정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이 33학점으로 조정됨.
제7차	2011-5-3	겸임교수 항목 (4) 추가.
제8차	2011-10-10	석.박사연계과정 항목 추가, 문구 정리.
제9차	2012-10-29	논문결과 학술지 게재필수 항목 추가, 2013년 1학기 논문심사자부터 시행.
제10차	2013-4-8	전공영역삭제. 입학자격 및 취득학점 관련 사항의 보충과목 내용 수정 본교 석사 출신자 및 경력자 영어시험 점수 제출면제 내용 추가.
제11차	2015-6-26	석사응시자격 및 필수교과목 관련 사항 내용 수정.
제12차	2016-5-16	외국인 재학생 종합시험 응시자격 관련 내용 추가.
제13차	2016-9-26	타전공생의 보충과목 관련 내용 정리, IBT점수 추가.
제14차	2017-3-20	통합디자인기획, 통합디자인전시기획 폐강, 통합디자인기획 프로젝트(필수과목)으로 신규 개설함에 따라 관련된 필수 과목 이수 내용 수정.
제15차	2017-12-11	졸업을 위한 최소학점을 석사과정 30학점, 통합과정 54학점으로 수정.
제16차	2018-9-3	종합시험 응시자격 및 논문 심사과정 및 자격 요건 변경. 2019년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시행.
제17차	2019-9-30	융합전공 개설에 따른 이수 내용 반영.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 조건 추가.
제18차	2019-11-25	종합시험 폐지에 따른 수료 조건 추가 및 박사과정 타 학과 취득 학점 요건 변경. 2020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시행. 이전 입학자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이 개정 내규의 적용 가능.
제19차	2020-2-10	시행세칙에 박사과정의 연구방법론2 과목 대체인정 내규 추가. 공통교과목과 통합교과목 통합 및 융합전공 이수내용 변경. 희망자에 한해 소급 적용함.
제20차	2020-6-22	공개발표 일정 변경 및 심사 추가. 2020년 2학기 논문 심사자부터 소급 적용함. 박사과정 수료자격 요건 주저자 기준 변경.
제21차	2021-3-8	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 시행세칙 추가.
제22차	2021-6-14	융합전공 승인 내용 변경.
제23차	2021-12-6	교과목종별 확인 내용 및 학술대회발표논문 대체 가능 항목 추가.
제24차	2022-09-19	석/박사 과정 수료요건 변경. 2022년 2학기 수료 심사자부터 소급 적용함.
제25차	2023-01-20	석/박사 과정 어학점수 기준 추가.

제26차	2023-07-05	석/박사 과정 수료 자격 및 신청 기준 수정.
제27차	2023-10-05	25차 내규에 맞춰 석/박사 과정 수료 자격요건과 외국어 성적 기준을 수정. 학위논문 대체실적 인정자의 심사과정 및 자격 요건을 수정하고 관련 시행세칙을 4항을 수정.

시행 세칙 :

1. 학점이수

재학생의 학점이수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아래의 표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교과과정표에 표기된 교과목종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이수하도록 한다.

석사과정	석사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소30학점 중 필수교과목9학점, 통합교과목9학점, 선택교과목12학점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타 학과 개설과목의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최대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(논문 대체 실적 승인을 위해서는 추가 6학점 이수).		
종별	학점	교과목	비고
필수 교과목	3	연구방법론1	
	3	통합디자인 기획과 프로젝트	
	3	디자인세미나	3학점 이수한다.
통합 교과목	9	9학점 이수한다.	
선택 교과목	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생의 세부전공 최소9학점</li> <li>- 타 세부전공 최소3학점</li> <li>- 논문 대체 실적 승인을 위해서는 추가 6학점 이수.</li> </ul>	
석.박사 연계과정	석.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54학점 중 필수교과목 13학점, 통합교과목15학점, 선택교과목 21학점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타 학과 개설과목의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최대1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		
종별	학점	교과목	비고
필수 교과목	3	연구방법론1	연구방법론 1 or 2를 지도교수 상의 하에 정함.
	1	디자인세미나(석사)	1학점 이수한다
	3	디자인세미나(박사)	3학점 이수한다.
	3	통합디자인 기획과 프로젝트	석사과목
	3	통합디자인연구	박사과목
통합 교과목	15	15학점 이상 이수	
선택 교과목	2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생의 세부전공 최소15학점</li> <li>- 타 세부전공 최소6학점</li> </ul>	
박사과정	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33학점 중 필수교과목 9학점, 통합교과목 9학점, 선택교과목 15학점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타 학과 개설과목의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최대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		
종별	학점	교과목	비고
필수 교과목	3	연구방법론1	석사과정에서 연구방법론1을 기수강한 경우, 연구방법론2를 필수로 인정함. 연구방법론2를 본 학과에서 이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, 타 전공에서 개설된 질적연구방법을 이수하면 본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대체 인정함.
	3	디자인세미나	3학점 이수한다.
	3	통합디자인연구	

통합 교과목	9	9학점 이상 이수한다.	
선택 교과목	15	- 학생의 세부전공 최소9학점 - 타 세부전공 최소6학점	

## 2. 융합전공 운영 세칙

- 융합전공 학생의 지도교수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한다.
- 융합전공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융합전공 내규 3장을 따른다.

## 3. 보충과목 이수

타 전공 입학자 (미술/디자인계열 전공 외/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포함)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입학 첫 학기 수강신청 전에 보충과목 인정원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보충과목의 이수는 교과목 이수와 합하여 한 학기에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, 보충과목 종별은 “보충” 또는 “청강”으로 신청한다.
- “보충”으로 신청한 과목은 성적은 평가되나,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에 합산하지 않으며, 졸업학점(30학점)에 포함하지 않는다.
- “청강”으로 신청한 과목은 “P” 또는 “NP”로 평가되며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에는 합산하지 않는다.
- 보충과목의 이수는 졸업사정 시 필수사항이므로 반드시 재학기간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.
- 보충과목의 인정원은 입학하는 첫 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에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학과가 정하는 양식(보충과목 이수 계획서)에 기재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보충과목의 이수 계획서는 “생활디자인학과 내규 시행세칙 1항”에 근거하여 교수회의에서 최종 검토한다.
- 보충과목 중 학부 과목은 수강신청 기간에 입력 불가능하므로 수강변경 기간에 대학원교학처에서 별도양식에 신청하여야 한다.

## 4.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승인

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운영내규(21.1.20)에 준하며,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로 운영된다.

- 적용대상 : 2018년 3월 이후 석사학위 과정 입학생 중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.
- 신청자격 : 석사 3학기 이상 이수자 중 자격요건(외국어시험 성적제출, 석사 수료요건)을 충족하고 학위논문 대체 실적을 제출하려는자. (단, 8학기 학생은 연구계획서 제출기한 내까지 대체실적 심사를 신청해야하고, 대체실적 미승인시 학기연장 불가)
- 대체실적 승인 필수요건:

구분	항목
필수요건 1	전공 선택 6학점 이상 추가 이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 3.0 이상
필수요건 2	연구계획서의 주제에 준하는 주제로 국제 2등급 이상 학술지 1편 게재 (주저자 기준)

- 석사학위 대체실적 신청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기간 내에 석사학위 대체실적 대상자로 신청하고 학과 교수회의에서 신청자격을 검토 받음.

- 심사대상자 승인 후, 논문 대체실적을 매학기 본심심사결과 등록일까지 제출하고 심사 신청을 함.
-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대체실적을 심사/판정하고, 학기말 성적등재 후 1주일 이내에 심사결과 및 대체 실적물을 학사포털에 입력함. 심사결과 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함. 대체실적 심사관련 제반 문서는 학과의 UDESK문서철에 보관함.
- 학위논문 대체실적 인정자는 공개발표심사에 참여는 하되 평가를 받지 않음.